



## 남아공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 및 시사점

-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에는 합의했으나, 연장 기간은 2012년 카타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
- 미국, 중국, 인도가 교토의정서에 불참하고 있고, 러시아, 일본, 캐나다가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에 불참할 수 있어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. 그러나, 글로벌 온실가스 방지체제 관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
- 글로벌 온실가스 방지체제 논의와는 별도로,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강화될 전망

## 1. 남아공 더반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요

- 2012년 이후 국제기후변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nference of the Parties 17)가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
  - 일정/ 장소: 2011년 11월 28일~12월 9일/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
  - 참석자: 194개국 정부 대표단(환경부 유영숙 장관 외 92명) 및 NGO 등 약 2만 5천 명
  - 주요 의제: 2012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연장 여부 등
    - 그밖에, 녹색기후기금·재정지원 조달 및 운영 계획, 기술이전 및 기후변화 적응, 2010년에 합의된 MRV(Measurable, Reportable, Verifiable) 방식도 논의

## 2. 주요 이슈 및 합의 내용

### □ 이슈 1: 2012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 및 정책 방향

- (선진국) 미국, 일본,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현행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하고, 중국, 인도 등을 감축의무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
  - 일본, 캐나다, 러시아는 미국, 중국, 인도 등의 의무감축 편입 없이는 교토의정서 연장 체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
  - EU는 주요 개도국들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의정서에 대해 협상할 것을 제의 (2015년까지 협상 완료, 2020년까지 발효)
- (개도국) 중국, 인도, 브라비아 등 개도국은 현행 교토의정서를 연장·유지하고, 개도국의 감축행동은 자발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
  - 중국 등 신흥개도국은 경제여건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감축계획을 강조하였으나, 2020년 이후 법적 구속력 있는 체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둠.
  - 군서도서국(AOSIS,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), 최빈개도국(LDCs, Least Developed Countries), 아프리카 그룹 등 많은 국가는 주요 개도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정서 채택을 주장
- ☞ (합의내용) ① 교토의정서 연장에는 합의했으나, 연장기간 (5년 또는 8년)에 대해서는 2012년 카타르 COP 18 총회에서 결정, ② 러시아, 일본, 캐나다의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 불참 가능성 오픈, ③ 모든 국가가 참여하기로 한

2020년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2015년까지 협상 완료(형태: protocol 또는 another legal instrument)

#### □ 이슈 2: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조성 방안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

- 2012년까지 300억 달러 긴급재원 마련과 매년 1,000억 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 조성(칸쿰 COP 16 총회)을 위한 위원회 결성 관련 논의
- 미국 등은 선진국만의 재원 공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으나, 사우디 등과 함께 녹색기후기금 관련 최종보고서의 채택을 지지

☞ (합의 내용) 녹색기후기금 설립 및 운영 위원회 설립 결정. 특히 기금 공여자로 글로벌 기업도 포함하는 것을 논의

*\*기금 운영사무국 유치에 싱가포르, 스위스, 한국 등 관심*

#### □ 이슈 3: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투명성 제고

-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을 통한 감축활동의 제3자 검증에 대한 요구 증대
- 탄소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탄소저감실적(carbon credit)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CDM(Clean Development Mechanism, 청정개발체제) 제도개선과 다양한 상쇄(offset) 제도의 논의가 가속화

☞ (합의 내용)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의 투명성 강화에 합의하고, 불명확한 CDM 절차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. 또한 탄소 포집, 저장을 CDM에 포함시킬지도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

CDM: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(부속서 I 국가)이 개발도상국(비부속서 I 국가)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선진국의 탄소저감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
상쇄제도: 자국의 감축목표를 타국에서 확보한 탄소저감실적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CDM이 대표적 사례이다. 최근에는 UN에서 승인하는 CDM외에 양국간 합의에 의해 탄소저감실적을 인정하는 양자승인 오프셋메카니즘(Bilateral Offset Mechanism)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.

#### □ 이슈 4: 기술이전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방안

-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과 녹색경제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필요

- ☞ (합의 내용) 개도국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기술집행위원회 (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)와 기술센터 설립에 합의

## □ 이슈 5: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 개최지 결정

- 5개 대륙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12년 아시아에 배정된 제18차 COP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한국과 카타르가 치열하게 경쟁

- ☞ (합의 내용) 총회 개최지로 카타르가 선정됨. 단, 2012년 6월경 개최되는 사전 각료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

## 3. 우리나라 입장 및 관련 국내·외 정책

- (한국 입장) 모든 국가들에 동일하게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체제는 글로벌 차원의 감축공약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, 중립적 입장 견지
  - 단, 2009년 이후 제시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협약(NAMA,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)(안)을 지지
- 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」에 따라 MRV에 기반한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(2012년)
  - 지경부 및 환경부는 녹색경영체제, 에너지경영체제, 녹색인증, 탄소라벨링, 녹색경영정보 공개제도 등을 2102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
  - ‘목표관리제’에 이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총량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논의 진행 중(현재 동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)
- 호주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, 미국과 EU는 ISO를 중심으로 에너지/탄소경영체제 및 성과에 관한 국제표준 논의를 확산
  - 미국은 ISO 기술위원회(Technical Committee 242)에서 에너지/탄소경영체제인 ISO 50001의 확정을 주도하였고, 에너지 baseline, 측정 및 검증 등 후속 국제 표준 추진
  - 특히 미국은 일본, 벨기에 등과 글로벌상호인정체제인 GSEP(Global Superior Energy Performance) 추진
  - 유럽은 미국 주도의 국제표준화 작업의 종단을 요구하면서 ISO TC257이라는 기술위원회에서 에너지 baseline, 측정 및 검증 등 후속 국제표준의 논의를 주장

## 4. 시사점

□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화 될 수 있으나 국가나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강화될 전망

○ 글로벌 기후변화방지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선진국과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(일본, 캐나다, 러시아를 제외한 선진 35개국)

-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, 중국, 인도와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 불참가능성을 열어둔 일본, 캐나다, 러시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세계 60%에 이릅니다.
- 따라서,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으로서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못함.

○ 그러나 교토의정서 연장 및 2020년 신체제 합의 등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정책방향의 확실성이 강화되었고, 특히 국가 및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강화될 전망

-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의 2020년 출범에 합의하였고, 또한 미국, 중국, 인도 등의 입장변화에 따라 강력한 온실가스 방지체제도 가능.
- 특히, 산업 부문별 또는 제품·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전망
- 선진국의 감축활동 보고서에는 ‘제3자 검토’를, 개도국 보고서에는 ‘제3자 분석’을 요구

□ 기업들은 외적으로 포스트-교토체제에 관한 국제사회 및 정부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내적으로 탄소경영체제 강화할 필요

- 정부가 국제적 합의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온실가스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
- 온실가스를 경영리스크로 인식하고, MRV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탄소경영체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

작성자: 안윤기 녹색성장연구실 실장([ygahn@posri.re.kr](mailto:ygahn@posri.re.kr)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.